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단3256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6393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단325632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탐승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이

담당변호사 김은정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희원

3. 학교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이

담당변호사 김은정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1,833,747원, 피고 C은 14,237,884원, 피고 학교법인 D은 10,779,28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주소지에서 E병원을, 피고 C은 주소지에서 F병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학교법인 D은 송달장소에서 G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표 기재 피보험자들(이하 ‘피보험자들’)과 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서는 피보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 등으로 인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진단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진단비 전액을 피보험자들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들에게 실손의료비로 위 진단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보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진단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상당액(별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피보험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바, 원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별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의 소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즉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

다. 먼저 원고가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서 피보험자들에게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갑 2, 3호증, 을 가 1 내지 3호증, 을 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 중 퇴행성 및 만성 손상 이외의 것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고, 그 중에서도 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한 추가진단검사는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피보험자들이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서 받은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가 위와 같은 요양급여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인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한편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피보험자들이 다수이고 피보험자별 보험금액이 소액이어서 원고가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고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판사 정창근

병원명	사고번호	피보험자	생년월일	성별	진단코드	진단명	구분	입원시작일	입원종료일	MRI 촬영년	환자부담금 ①	MRI진단료 비급여 ②	편의금액 ②-①
				여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통원	20110325	20110325	2011	91,948	420,000	328,052
				여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10831	20110916	2011	91,948	1,020,000	928,052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통원	20110928	20110928	2011	91,948	420,000	328,052
				남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통원	20120225	20120225	2012	89,469	450,000	360,531
				남성	S83.1	무릎의 탈구	통원	20120604	20120604	2012	89,469	450,000	360,531
				여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20615	20120616	2012	89,469	450,000	360,531
				남성	S83.22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21102	20121122	2012	70,716	450,000	379,284
				여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입원	20121120	20121124	2012	70,716	450,000	379,284
				남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21124	20121124	2012	70,716	450,000	379,284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입원	20130204	20130208	2013	101,289	450,000	348,711
				남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314	20130402	2013	101,289	900,000	798,711
				남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409	20130410	2013	101,289	450,000	348,711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521	20130523	2013	101,289	450,000	348,711
				남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통원	20130525	20130525	2013	101,289	450,000	348,711
				남성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통원	20130607	20130607	2013	101,289	450,000	348,711
				남성	S83.53	후십자인대의 파열	통원	20140425	20140425	2014	103,244	450,000	346,756
				여성	S83.53	후십자인대의 파열	입원	20140602	20140611	2014	103,244	500,000	396,756
				여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통원	20140930	20140930	2014	103,244	500,000	396,756
				여성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입원	20141029	20141030	2014	103,244	500,000	396,756
				남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통원	20150117	20150117	2015	105,046	500,000	394,954
				남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입원	20150221	20150222	2015	105,046	500,000	394,954
				여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입원	20150504	20150505	2015	105,046	500,000	394,954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입원	20150930	20151001	2015	105,046	500,000	394,954
				여성	S83.0	무릎뼈의 탈구	통원	20151103	20151103	2015	105,046	500,000	394,954
				여성	S83.51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입원	20160802	20160804	2016	106,546	500,000	393,454
				여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71011	20171023	2017	105,520	500,000	394,480
				남성	S83.53	후십자인대의 파열	입원	20180314	20180324	2018	104,289	500,000	395,711

				남성	583.53	후십자연대의 파열	임원	20180509	20180512	2018	104,289	500,000	395,711
				여성	5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임원	20190211	20190302	2019	103,270	500,000	396,730

11,833,747

병원명	사고번호	피보험자	생년월일	성별	진단코드	진단명	구분	입원시작일	입원종료일	MRI 촬영년	환자부담금 ①	MRI진단료 비급여 ②	평가금액 ②-①
				남성	S83.3	원손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입원	20110531	20110630	2011	91,948	400,000	308,052
				여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통원	20110805	20110805	2011	91,948	400,000	308,052
				남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입원	20111224	20120121	2011	91,948	400,000	308,052
				남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입원	20120711	20120711	2012	89,469	400,000	310,531
				여성	S83.2	원손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21030	20121030	2012	70,716	400,000	329,284
				남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입원	20121217	20130208	2012	70,716	400,000	329,284
				남성	S83.2	원손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102	20130112	2013	101,289	400,000	298,711
				여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통원	20130218	20130218	2013	101,289	400,000	298,711
				남성	S83.21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30821	20130821	2013	101,289	400,000	298,711
				남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입원	20140728	20140731	2014	103,244	400,000	296,756
				남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입원	20140805	20140806	2014	103,244	400,000	296,756
				여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입원	20140821	20140827	2014	103,244	800,000	696,756
				여성	S83.22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40827	20140906	2014	103,244	400,000	296,756
				남성	S83.21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40925	20141013	2014	103,244	400,000	296,756
				남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입원	20141010	20141012	2014	103,244	470,000	366,756
				남성	S83.3	원손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입원	20150107	20150108	2015	105,046	400,000	294,954
				여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통원	20150127	20150127	2015	105,046	400,000	294,954
				여성	S83.21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50225	20150227	2015	105,046	400,000	294,954
				남성	S83.21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50320	20150323	2015	105,046	400,000	294,954
				남성	S83.21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50429	20150506	2015	105,046	400,000	294,954
				남성	S83.21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50504	20150509	2015	105,046	400,000	294,954
				여성	S83.50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입원	20150730	20150820	2015	105,046	450,000	344,954
				남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통원	20151217	20151217	2015	105,046	450,000	344,954
				여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입원	20160122	20160205	2016	106,546	450,000	343,454
				여성	S83.21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60303	20160402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60305	20160305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60309	20160310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통원	20160315	20160315	2016	106,546	450,000	343,454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60531	20160603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입원	20160531	20160617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21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60608	20160611	2016	106,546	900,000	793,454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입원	20160708	20160710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입원	20161012	20161014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입원	20161129	20161201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입원	20161219	20170109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70222	20170222	2017	105,520	550,000	444,480
				남성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입원	20170529	20170531	2017	105,520	450,000	344,480
				남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통원	20170707	20170707	2017	105,520	450,000	344,480
				남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통원	20180607	20180607	2018	105,520	450,000	344,480
				여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입원	20181224	20190112	2018	105,520	450,000	344,480
				여성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입원	20190130	20190215	2019	105,520	450,000	344,480

14,237,884

병명명	사고번호	피보험자	생년월일	성별	진단코드	진단명	구분	입원시작일	입원종료일	MRI 촬영년도	환자부담금 ①	MRI진단료 비급여 ②	권취금액 ③-①
				여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입원	20110906	20110921	2011	91,948	480,000	388,052
				남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입원	20120410	20120423	2012	89,469	530,000	440,531
				여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통원	20120927	20120927	2012	70,716	530,000	459,284
				여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21106	20121106	2012	70,716	530,000	459,284
				여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입원	20130118	20130214	2013	101,289	560,000	458,711
				남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통원	20130702	20130702	2013	101,289	560,000	458,711
				여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통원	20130801	20130801	2013	101,289	560,000	458,711
				남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통원	20140326	20140326	2014	103,244	560,000	456,756
				남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통원	20140517	20140517	2014	103,244	560,000	456,756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입원	20150326	20150330	2015	105,046	560,000	454,954
				여성	S83.22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50401	20150425	2015	105,046	560,000	454,954
				남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입원	20150608	20150612	2015	105,046	560,000	454,954
				남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통원	20160721	20160721	2016	106,546	576,000	469,454
				남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입원	20160823	20160913	2016	106,546	576,000	469,454
				여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입원	20161024	20161104	2016	106,546	576,000	469,454
				여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입원	20170113	20170115	2017	108,496	576,000	467,504
				남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70509	20170509	2017	108,496	576,000	467,504
				남성	S83.53	후십자인대의 파열	통원	20171209	20171209	2017	105,520	576,000	470,480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입원	20180625	20180626	2018	104,289	604,800	500,511
				여성	S83.21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80706	20180707	2018	104,289	604,800	500,511
				여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입원	20180717	20180723	2018	104,289	604,800	500,511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통원	20181204	20181204	2018	104,289	604,800	500,511
				남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입원	20190604	20190610	2019	103,270	665,000	561,730

10,779,282

